

긴급입찰 사유서

□ 공사명 :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 긴급입찰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사유 및 법적근거

○ 긴급입찰 사유

-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 하고자 함.
-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2028년 3월 개교하는 가칭)검단3중 학교를 적기에 개교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긴급으로 진행하고자 함.

○ 법령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